

2020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포럼

#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 주제 발표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종합적 대응방안”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

2020. 7. 23.(목) 13:30  
제주인권교육센터 2층

주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후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과 성평등교육진흥 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0년 제 1차 여성·가족정책 포럼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하신 내·외 귀빈을 비롯한 관련단체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배포·소비 및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 90년대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단톡방이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범죄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고, 빠른 확산속도, 지역과 공간을 넘나드는 범죄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10대 여성의 그루밍 범죄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대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확대, 피해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실효성, 그리고 지역현황 파악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이 우리지역에 잘 스며들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의 서승희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승희 대표님은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진단과 필요한 정책방향을 정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역현안을 정리한 이화진 연구위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제주대학교 염미경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님을 비롯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오규식 대장님, 1366 제주센터의 심화정 센터장님, 고은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분야의 기관대표와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추진이 가능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 포럼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 무 숙**

## 축 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여성과 가족의 권익양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 속에 “2020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포럼”이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이루어지게 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 협박, 저장, 전비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범죄의 수법은 다양화되고 있고, 파급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실천,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 맞춤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그루밍의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피해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한 대처와 지역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디지털 범죄 예방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 형성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안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 영 식**



# Program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30	사전 등록	30분
13:30~13:40	참석자 소개	10분
13:40~1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 회 사 : 민무숙 (여성가족연구원장)</li> <li>◆ 축 사 :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li> </ul>	10분
13:50~1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1 :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 방향</li> <li>-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li> </ul>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발표 2 :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정책 과제</li> <li>-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li> </ul>	20분
14:35~14:40	BREAK TIME	5분
14:40~15:30	<p style="text-align: center;"><b>좌 장 : 염미경 교수(제주대학교)</b></p> <p>(토론 1) 권김현영(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p> <p>(토론 2) 오규식(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p> <p>(토론 3) 심화정(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p> <p>(토론 4) 고은실(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p> <p>(토론 5)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p>	각10분
15:30~15:40	질의 응답	10분
15:40	폐 회	





## 목 차

### 제 1부. 주제 발표

- ▶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종합적 대응방안 ..... 9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
- ▶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 과제 ..... 21  
-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제 2부. 토론 및 질의응답

- ▶ 토론문 1 ..... 37  
-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
- ▶ 토론문 2 ..... 41  
- 오규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
- ▶ 토론문 3 ..... 43  
- 심화정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 ▶ 토론문 4 ..... 47  
-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 토론문 5 ..... 51  
-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주제발표 1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종합적 대응방안**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



#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종합적 대응방안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

##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한 성폭력 사건들이 크게 대두되며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문제와 성착취 산업이 드러나며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현장단체로서 이번 법 개정에 반색하는 한편 이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이 폭력의 종합적 대응방안이 무엇일지는 실제 우리의 치열한 고민 주제이다. 피해지원 현장은 우리의 운동적 방향을 가리킨다. 이 경험을 근거로 크게 피해지원 영역, 입법 공백, 그리고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에서의 방향

### 1)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설치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 할 때에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이 전통적 의미의 성폭력과 굉장히 다른 새로운 폭력이라는 점에 집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의 기저에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성혐오가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성폭력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두 가지 지점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늘 ‘기존의 성폭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상상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에 있어서 삭제 지원과 같은 기존의 성폭력 피해지원에 없던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지원이나 지지 상담을 할 때에도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이해해

야 하며,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세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폭력에 집중하여 피해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확장하는 주체가 늘어나야 한다. 오랜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현재의 성폭력 피해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지만 현재 체계 안의 활동가들은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낯선 영역에 대한 막막한 고민을 각자 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성폭력 상담원 양성 과정 100시간 내에 디지털 성폭력 과정을 추가 편성하거나, 각 상담소 자체적으로 보수교육 등 역량강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는 폭력의 성격이나 피해경험자의 연령, 국적 등에 따라 특수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의 전국적인 수요는 더 이상 삭제지원에 집중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서울에 위치한 작은 비영리 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기존 성폭력 상담소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별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화 상담소라는 형태가 결국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문제를 개별화하여 오히려 피해경험자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에서도 역시나 많은 사례들이 강간, 강제추행,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다른 유형의 여성폭력과 중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지원 체계를 명확히 분리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처럼 피해지원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통합 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

## 2) 삭제 지원의 한계를 넘어선 삭제 지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지원은 바로 삭제 지원이다. 때문에 삭제지원이 절대적 피해 대응책처럼 여겨지기도 하나 우리는 삭제 지원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짚어야만 한다. 우선 삭제 지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촬영물 원본을 시청해야한다는 점, 모니터링하며 피해촬영물을 찾아낸다는 점, 삭제를 위해 조회하고 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 자체가 가해행위가 가담하는 특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삭제지원은 공공연히 전시된 즉 이미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는 사후 조치이며 피해경험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할 수 없다. 사전에 유포를 막

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없고 완벽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을 때, 유포 자체가 고통인 피해경험자에게 디지털 성폭력은 마치 영원한 고통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많은 피해경험자가 자신의 촬영물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길 바라며 잊혀지는 것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처럼 여기기도 한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경험자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이 18시에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새벽까지 눈이 빠져라 자신의 촬영물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삭제 지원이 불완전한 것과 별개로 이 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자에게 지원 공백은 곧 가혹한 방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삭제 지원은 일개 민간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국가적 체계 안에서 소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피해경험자가 직접 새벽에 삭제하느라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백 없이 24시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기술력을 보강하고 더 빠르게 더 완벽히 삭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한계가 있는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삭제 지원이 사후 조치일 때 우리는 피해의 원천적 차단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삭제 지원 방식은 피해촬영물 직접 삭제와 더불어 방심위 신고를 통한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원본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지 않으면 접속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ip를 우회하면 또 접속이 가능한 한계가 있음을 피해자들도, 가해자들도 알고 있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삭제가 아니다. 또한 국가적 지원의 역할도 그것이 아니라,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라면 심지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라면 경찰 수사와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져야 피해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문제적 사이트의 게시물 하나하나를 차단 조치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 본질적 가해 행위차단을 목적으로 삭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계를 넘어선 삭제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피해자의 권리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이 문장을 바꿔 말하자면, 현재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권이 박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사회권

박탈은 여러 차례 조명되어 왔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 체계를 상상해내지 못했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명과 생계비 지원이 제공된다고 보도되었으나 사실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를 홍보한 것이지 전에 없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본 단체에서 지원 중인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은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계비 지원을 신청 중에 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신상정보가 유포되었기 때문인데, 피해의 심각성은 감히 실존하는 당사자 앞에서 함부로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실제로 2018년 직장에서 피해촬영물을 직접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너의 성관계 영상이 맞느냐?”라고 물으며 부당하고 한 사례를 기억한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부당해고가 발생했다. ‘너가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박사방” 피해자라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해고를 통보했다. 피해경험자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박사방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피해 이후 생계가 너무 곤란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해 이름을 바꾸고 얼굴까지 바꿀 생각을 한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며 따돌림을 당하고 고립된 생활로 우울증을 겪는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미약한 이 상황에서 지원자는 그럼에도 당신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지의 언어가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실제로 피해경험자가 일상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가 서류 보완요청을 받고 포기한 사례가 있다. 직장에 근로 중이었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했고, 피해경험자는 피해사실이 세상에 모두 알려진 상태에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용기가 없었다. 발급 사유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회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고 부당해고 하진 않을지 고민 끝에 그냥 지원받기를 포기했다. 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때 그 지원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피해경험자에게 가닿을 수 있는지, 폭력의 특성들이 고려된 절차인지 고민하게 된다.

지난 달 본 단체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의 일상회복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하루>를 진행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아 피해경험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프로젝트였고 제목 그대로 피해경험자가 직접 만드는 하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총 44,030,000원의 후원금을 모아 58명의 피해경험자에게 배분했고, 피해를 입

증하거나 사용내역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이 피해 이후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은지 기획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준비했다. 신청서에는 친구와 밥 먹기, 여행가기, 요가 배우기, 학원 다니기, 핸드폰 요금 내기, 생리대 구매하기 등 각자의 사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 자신을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권리들을 성폭력 피해를 겪은 누군가는 애써서 계획해야 할 때, 이런 노력들이 실현가능하도록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실험적 지원 프로젝트였다. 오롯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상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3. 'n번방 방지법' 이후의 디지털 성폭력 입법 공백

형사 소송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지만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경험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디지털성폭력 사건에서는 촬영물 유포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자를 고소하거나 유포 협박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곧 피해를 중단하기 위한 제도권 내에서의 대응 기회를 피해경험자에게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2020년 4월 29일 20대 국회의 막바지 시점의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존의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입법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sup>1)</sup> 특히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항의 신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불법촬영

1) 2020년 6월 30일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물이나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원본 혹은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의 신설은 디지털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였고, 피해촬영물의 유통 시장에서의 수요의 측면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그렇지만 피해경험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가해자의 피해촬영물 소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는 것이다.

충분히 유의미한 개정이지만, 지금까지는 촬영물을 이용한 유형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이 논의되어 왔음을 짚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중심이었고 그 밖의 유형들은 아직도 처벌 공백이 남아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언어적 성폭력과 온라인 그루밍 유형이 대표적이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을 해석하는 법의 관점이 ‘음란’ 개념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들도 앞으로 개선해나갈 과제이다.

### 1)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본 단체에서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라고 통칭하는 피해 유형을 다루고 있고, 이는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낙인찍는 방식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에서 피해경험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기도 하고 허위사실과 성적인 모욕을 동반한 방식이 대부분이다. 혹은 사이버 스토킹이나 단톡방 내에서의 성희롱도 포함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일일이 범죄화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상의 성폭력이 있어왔듯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름 붙여지지 못하고 처벌법조차 없는 성폭력이 발생한다. 결국 이런 피해들은 사례에 따라 구성요건을 맞추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를 겪은 사람은 성폭력 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사회가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사소하게 여긴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 회복이 아닌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가 전부인 것처럼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혹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포괄할 때 언어적 성폭력의 유형과 지원 공백, 처벌법 미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이 계속 변모해 이제는 굳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아도, 혹은 촬영물을 합성하지 않아도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 여성의 신상정보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낙인 찍고 사칭하고 도용하면서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피해를 겪은 사람도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처벌법과 사회적 제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온라인 그루밍

본 단체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은 성적 촬영물이 착취되는 사례다. 현행법상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적확하게 처벌할 수 없기에 가해자가 접근하여 성적 촬영물을 착취하는 과정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하여 아청법 제11조<sup>2)</sup> 1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 가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혹은 아청법 제11조의 5항 소지죄로 다루기도 한다. 사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투여되는지에 따라, 어떤 재량을 가진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엄밀히 이 가해 행위를 ‘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제목개정 2020. 6. 2.]

1항의 내용에 보다 성착취 행위를 제대로 담아낼 표현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루밍은 어떠한 가해 행위 목적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그루밍의 결과 값으로 성착취물 착취,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그루밍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소거된 채 결과 값에 따른 처벌만 진행하는 실정이며, 위법한 결과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루밍 사례는 법적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현실의 피해를 담아낼 법의 부재함을 증명한다. 최근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처벌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

### 3) ‘음란’ 개념에 대한 문제

성 표현물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음란’의 개념은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보는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특성이 있고 성 표현물의 범죄성을 판단할 때 역시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음란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본질은 얼마나 음란한지에 있지 않음에도 그동안의 형법 체계의 음란 개념이 차용되며 손쉽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전신이 불법촬영 되었을 경우 음란한 신체 부위가 얼마나 부각되었는지, 피해경험자가 얼마나 음란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따위가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하며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보도된 의정부지방법원의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에서 ‘음란하지 않아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것’의 견본으로 스키니진을 선정했고, 그것과 비교해 레깅스가 더 음란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 11조의 용어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성폭력을 판단하는 관점과 주체가 바뀌고 그동안의 음란 개념을 탈피해야 폭력의 본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디지털 성폭력 삭제 지원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특성에 따른 보완지점들이 남아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될 시점에 신설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33)을 근거로 삭제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지원 대상 피해의 범위와 영역, 구상권 행사의 실효적 문제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피해촬영물을 압수하는 방식, 압수 이후의 조치, 재판 과정에서 피해촬영물 증거 사용 관련 문제, 원본 폐기의 정의 등 지금까지 재량으로 판단되어 왔던 부분들이 보다 정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제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 4. 디지털 성폭력 전담 기구 마련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되었고 이후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 및 정부 부처에 전문TF가 만들어졌다. 민간에서부터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조급하고 숨 가쁘게 방법들을 강구해왔고 현 시점까지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역별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 지원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실효적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전문적 자원들을 투입하여 삭제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통합적 시스템,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 개발, 실태와 플랫폼 모니터링, 사례 연구와 실태 분석, 교육과 인식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을 출현하여 각개 전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을 기존의 전통적 성폭력과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다루어선 안 되나 특성들은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모으고 기존 여성폭력 체계와 통합해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관련 분야의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큰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편과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산하 기관의 활용한 방법도 고려해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대응책의 이음새를 정교하게 기우고 실질적인 책임을 다 할 전담 기구 마련이 현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5. 나가며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왔다. 생후 몇 개월 아기를 포함한 여성들을 강간하고 착취한 영상 20만 개를 유통한 자가 1년 6개월 형을 받고 석방되었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설계자인 양진호는 아직도 음란물 유통 혐의는 기소되지도 않았다. 버닝썬 대표는 1년 구형 받았고 승리는 군 입대를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최종범의 불법촬영은 결국 무죄가 되었다. 일일이 세지도 못할 수많은 절망 속에서 피해당사자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유독 오늘이 힘겹게 느껴진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비영리여성인권운동단체로 2017년 206명, 2018년 314명, 2019년 약 300명의 피해경험자를 지원하여 개소 이래로 약 1,000명의 피해경험자를 지원하였다. 현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여러 성폭력 피해지원 단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경험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 여가부 산하에 삭제지원 센터가 만들어졌고, 성폭력 처벌법이 몇 차례나 개정되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의 거대한 목소리가 파도처럼 해화역을 덮기도 했다. 멀리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성과들로 쌓여진 역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n번방 방지법’은 이제 겨우 최소한의 공백이 메워진 것뿐이다. 피해지원 체계, 피해경험자의 권리보장, 처벌법 등 입법 공백, 교육, 인식개선 등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있다. 이 모든 영역에서의 종합적 대응 방향은 전통적 여성폭력에서 디지털 성폭력만을 분절시키지 않되 특성을 고려하여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합성도 성폭력이고 유포 협박도 성폭력이라고 줄기차게 말해왔고 결국 이루어졌듯이 이미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 것임을 믿는다.

주제발표 2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 과제**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정책 과제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사하는 성범죄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가 이에 속함
  -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공간에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의 제작, 유포, 참여, 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범죄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이 가지는 무한 복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집단적 가해행위가 가능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음
-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으로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표 1>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과 처벌내용**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시행일자 및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b>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 (제 14조의 2), 시행일자 : 1998. 1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촬영만 처벌</li> <li>- 타인의 신체촬영만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b>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 (제 13조), 시행일자 : 2010. 4.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li> <li>- 영리목적의 비동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시 가중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b>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 (제 14조), 시행일자 : 2013. 6.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촬영 후 비동의 유포시 처벌, 비동의 촬영시보다 처벌수위 낮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b>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 (제14조), 시행일자 : 2018. 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의 비동의유포시 처벌추가</li> <li>- 촬영과 유포 별도 규정</li> <li>- 비동의 촬영죄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li> <li>-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li> <li>-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외에 복제물을 추가</li> <li>- 영리목적의 동의, 비동의촬영물, 복제물의 비동의유포시 벌금형 삭제 통한 처벌강화(7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으로 개정)</li> </ul>
	<p>「<b>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b>」 (제14조 1) 개정일자 : 2020. 5.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자구입·저장 또는 시청(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li> </ul>
	<p>「<b>허위영상물 등의 반포</b>, (제 14조 2) : 시행일자 :2020. 6.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합성 법제화</li> <li>-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벌금형 상향 조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li> <li>-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자 가중처벌(7년이하 징역)</li> </ul> <p>「<b>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b> (제 14조 3) : 개정일자 :2020. 5.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li> <li>-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li> </ul>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b>불법정보의 유통금지</b>」 : 2018년 6월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금지</li> </u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b>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b>」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혹은 5년이하의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li> <li>-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10년 이하 징역</li> <li>-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li> <li>-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하 징역</li> <li>-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및 대응

### 1) 중앙정부의 대응

- 정부는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함<sup>4)</sup>
  -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 보호의 내실화 등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음
-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작행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판매행위 형량확대를 비롯한 법정형량을 강화하고 형 집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및 잠입 수사 도입으로 초기 단계의 적극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 및 구매행위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함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률상에 '피해자'로 명시하여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상의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
-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
  - 이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특히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초·중·고 학교에 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연계를 강화할 예정임
-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선 삭제, 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신속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3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sup>5)</sup>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피해사례 신청을 받고 신속한 삭제, 심리치료, 상담 및 수사, 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함

4)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히”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 4. 23)

5)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4. 1)

## 2) 제주지역 관련기관의 대응

### 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광지나 공원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탐지기 설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캠페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장소의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의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대대적으로 조사<sup>6)</sup>하고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및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카메라 탐지기 등을 설치하였음
  - 지역 유관기관과의 합동 캠페인은 경찰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16개 기관과 협력하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음<sup>7)</sup>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 2종을 제작하여 교육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음

###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도 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생활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체육건강과의 학교보건 부서에서 양성평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단위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학내 CCTV 설치 등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학생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대응을 마련하고 있음<sup>8)</sup>
  - 아울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학교 밖 사회단체와도 협력하고 있음

### 다) 제주지방경찰청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 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음<sup>9)</sup>

6) 제주특별자치도. 2017.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참조

7) “민·관·경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보도자료 (2020. 5. 3)

8) “도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19. 8.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

9) 사이버 성폭력팀은 2018년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특별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 사이버 성폭력 전담팀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여타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음<sup>10)</sup>
  -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피해발생 확인 즉시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고 있음
- 2020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 5월말 현재 17건을 수사하여 13명을 검거하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1) 전국 현황

- 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전국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3만 건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7년 이후 약 20%((2018년 20.2%, 2019년 19.0%) 정도를 차지하며 최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표 2>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7-2019)**

(단위 : 건, %)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 강도 강간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계
2019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32,104 (100.0)
2018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32,824 (100.0)
2017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100.0)

자료: 대검찰청 범죄통계. 2020.

-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전체 폭력 범죄 대비 2019년 기준 8.9%, 성추행 및 성폭행은 3.9%로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2019년 1월 전국 지방청에 정식 직제화 되었음 (“경찰, 사이버 조직·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이버 성폭력·도박 등 총력 대응” 경찰청 보도자료 2019. 1. 25)

10) 최근 제주지방경찰청 주최 유관기관 협력 정책 간담회는 성범죄 관련(2019. 11. 21), 디지털성범죄 관련(2020. 4. 8) 행정기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제주지방경찰청, 성범죄 유관기관 합동정책 간담회 개최. 2019. 11. 20 보도자료. “제주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협업 간담회”. 2020. 4. 8 보도자료 참조)

<표 3> 전국 학교 폭력 피해 유형

(단위 : %)

구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성폭행
2019년 1차	35.6	23.2	<b>8.9</b>	8.7	8.6	6.3	4.9	3.9
2018년 1차	34.7	17.2	<b>10.8</b>	11.8	10.0	6.4	3.9	5.2
2017년 1차	34.1	16.6	<b>9.8</b>	12.3	11.7	6.4	4.0	5.1

자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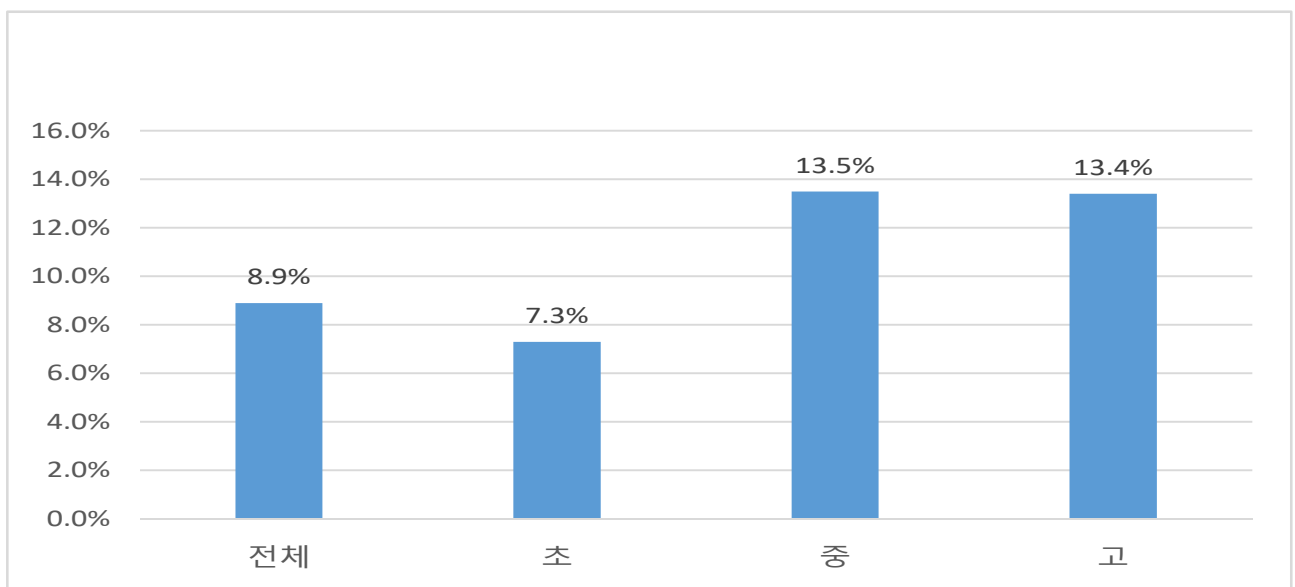
- 학교유형별 사이버 괴롭힘 비율은 2019년 기준 중학교(13.5%)와 고등학교 학생(13.4%)의 비율로 높게 나타나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4> 전국 학교폭력 피해 유형(초.중.고)

(단위 : %)

구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성폭행
전체	35.6	23.2	<b>8.9</b>	8.7	8.6	6.3	4.9	3.9
초	35.1	23.8	<b>7.3</b>	8.8	9.2	6.5	5.3	3.9
중	35.8	21.9	<b>13.5</b>	8.9	6.7	5.6	4.0	3.6
고	39.4	20.6	<b>13.4</b>	7.4	6.3	5.0	3.9	4.0

자료: 교육부 2019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9.8.26.)



## 2) 제주지역 현황

### 가. 제주지방경찰청 범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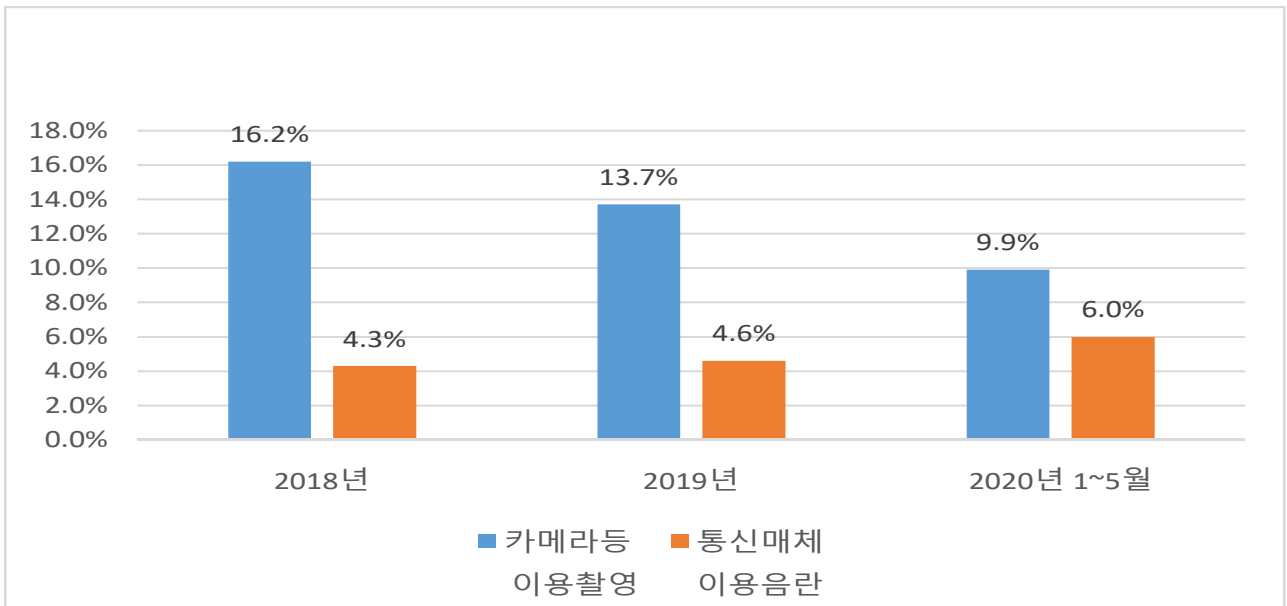
-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505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인구 대비 10만명당 발생비로 계산하면 약 78건으로 전국대비 높은 발생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9.0%, 제주 13.7%)로 전국에 비해 약간 낮고, 통신매체 음란 범죄는 (전국 4.3%, 제주 4.6%)로 전국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5> 제주지역 연도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 %)	총 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2020년(1~5월)	182 (100.0)	151 (83.0)	18 (9.9)	11 (6.0)	2 (1.1)
2019년	505 (100.0)	404 (80.0)	69 (13.7)	23 (4.6)	9 (1.8)
2018년	489 (100.0)	382 (78.1)	79 (16.2)	21 (4.3)	7 (1.4)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20.



-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괴롭힘은 2019년 기준 7.8%로 나타나 전국수치(2019년 8.9%, 표2 참조)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성추행 및 성폭행(2019년 전국 3.9%, 제주 4.0%)은 전국수치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표 6> 제주도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복 응답 (단위 : 명, (%))

구분 (명, %)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강제 심부름	성추행 ·성폭행	합계
2019년 1차	694 (35.9)	446 (23.1)	<b>150</b> <b>(7.8)</b>	137 (7.1)	165 (8.5)	138 (7.1)	123 (6.4)	78 (4.0)	1,931 (100.0)
2018년 1차	688 (34.1)	335 (16.6)	<b>200</b> <b>(9.9)</b>	230 (11.4)	230 (11.4)	133 (6.6)	93 (4.6)	106 (5.3)	2,015 (100)
2017년 1차	572 (33.8)	267 (15.8)	<b>138</b> <b>(8.1)</b>	184 (10.9)	223 (13.2)	128 (7.6)	106 (6.3)	76 (4.5)	1,694 (1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온라인 조사)결과.(2019.8.28.)

#### 나.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지원 분석(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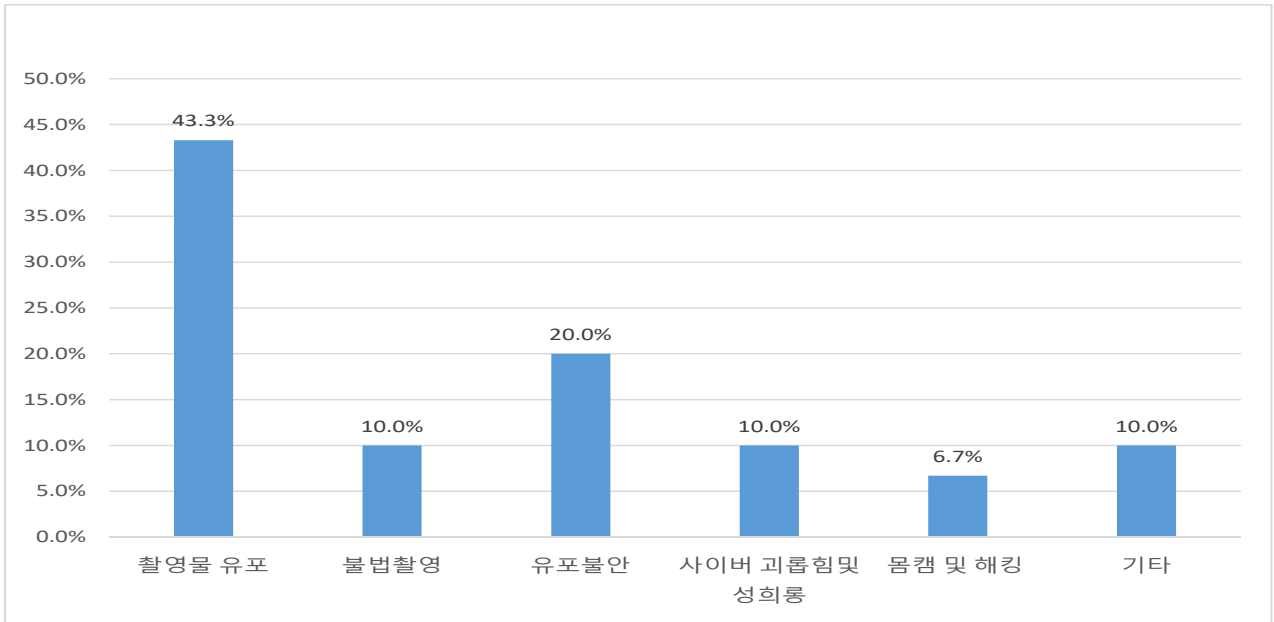
-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실적 중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48건, 2020년 5월말 현재 총 30건으로 나타남
  - 2020년 5월말 현재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 30건 중 높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촬영물 유포(43.3%), 유포불안(20.0%) 사이버 괴롭힘 및 불법촬영 순으로 나타남

<표 7> 1366 제주센터 상담 건수 중 디지털성범죄 유형(2020. 1월~5월)

(단위 : 건, (%))

구분(건, %)	합계	촬영물 유포	불법촬영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및 성희롱	몸캠 및 해킹	기타
전체	30 (100.0)	13 (43.3)	3 (10.0)	6 (20.0)	3 (10.0)	2 (6.7)	3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관련 상담은 약간 증가(2017년 6.0%, 2018년 7.9%)한 반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 상담은 대폭 증가(2017년 2.2%, 2018년 10.0%)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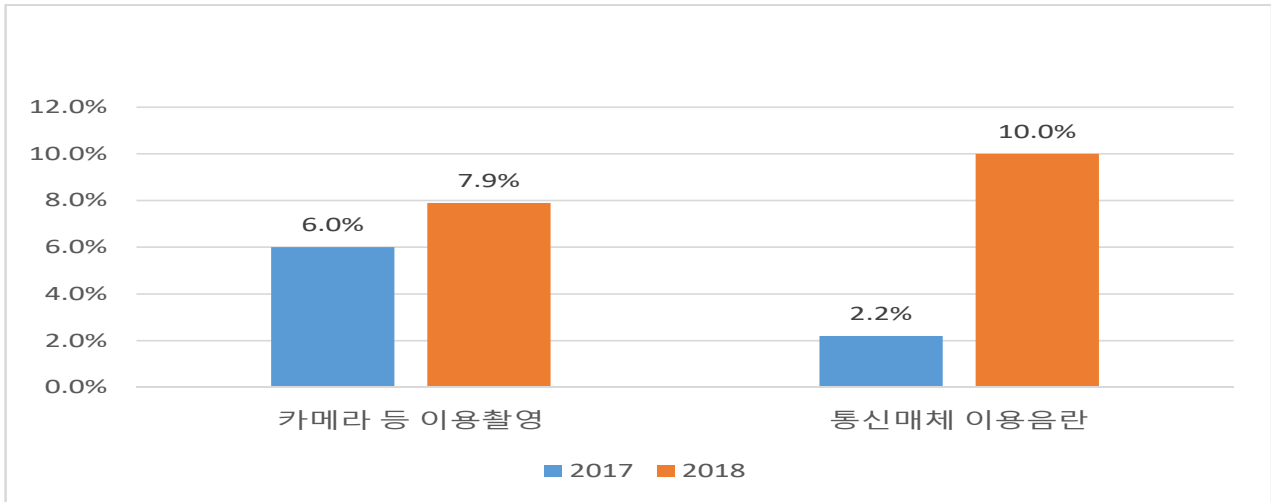
<표 8> 제주지역 성폭력 상담 현황(성폭력 상담소)

(단위 : 명, 건, (%))

연도	소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 성희롱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기타
2019	2,011 (100.0)	945 (47.0)	581 (28.9)	212 (10.5)	105 (5.2)	86 (4.3)	82 (4.1)
2018	280 (100.0)	87 (31.1)	76 (27.1)	18 (6.4)	22 (7.9)	28 (10.0)	49 (17.5)
2017	183 (100.0)	64 (35.0)	80 (43.7)	10 (5.5)	11 (6.0)	4 (2.2)	14 (7.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20.

주 : 2017, 2018년 수치는 상담 인원수, 2019년 수치는 상담건수로 동일비교 불가



####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 1)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홍보강화와 인식개선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처벌내용이 구체화되고 처벌수위도 강화됨, 이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불법 영상물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행위과정에서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함

##### 2) 가해자 관리 및 교정 대책 마련

- 청소년들이 가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최근 발표에 의하면<sup>11)</sup> 성착취물 구매자들의 연령이 20대(79.4%), 30대(13.0%), 10대(5.4%) 순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성착취물 구매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관리 및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영상물 유포와 유포 불안(1366 상담 통계 <표 8> 참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사이버 상의 영상물 삭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상에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함
-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편리하게 지원의뢰가 가능하도록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관련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증원 검토가 필요함

11) 강원경찰청, 아동성착취물 구매자 131명 검거. 강원경찰청 보도자료(2020. 7. 1)



#### 4) 효율적 예방교육 체계 마련 및 교육의 내실화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루밍 수법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10대 청소년들 대상으로 행하는 범죄가 많은 만큼 범죄관련 체계적인 연구와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 피해자 및 피해의 특성이 선물이나 관심표현 등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청소년 복지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함
- 제주도교육청에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권장
- 학교현장에서의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기관(행정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 5) 디지털 성폭력 피해유형 및 연령별 특성 관련 조사 연구

-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통계자료 생산이 부족함
- 관련분야 통계자료 생성 및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및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토론문

- (토론 1) 권김현영(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
- (토론 2) 오규식(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
- (토론 3) 심화정(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 (토론 4) 고은실(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토론 5)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보충 의견 및 제언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 현황을 비롯하여 피해지원 영역, 입법 공백, 종합적인 대응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두 분의 발표를 통해, 실태와 방향에 대한 현재의 지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년간 디지털 성폭력 문제 자체를 가시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현재 성폭력 관련 법제의 공백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셨을 서승희님의 발표를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 (1) 피해지원체계에 대해

첫째, 특화상담소의 설치에 대해. 서승희님은 디지털 성폭력은 전통적 의미의 성폭력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므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 반영되어 특화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으로 제안된 부분은 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등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발표문에도 적시하신대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의 전국적인 수요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의 복합 피해경험 고려하면 특화상담소 설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폭력 전체 신고건수 중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비율이 급증하여 평균 20%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특화상담소보다는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기관이 디지털성폭력과 관련하여 집중, 보수 교육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특화 상담소가 아닌 디지털 성폭력 특화된 형태의 기관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이 기관은 상담소의 기능보다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지표 사건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의 형태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가부가 핵심이 되어 추진 및 실행 체계를 총괄하는 방식에 동의하나, 방심위와 경찰청 등 유관기구에 대해 여가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같은 형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셋째, 삭제지원 과정에서 피해촬영물을 보게 되어 가해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특징. 공백없는 24시간 지원. 사후 조치의 한계를 넘어선 삭제 지원 등의 문제는 경찰청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 수사대를 따로 구성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호주의 경우 24시간 이내 삭제 등 업무매뉴얼 있음) 부당해고 발생 등 사건 이후의 불이익도 역시 통합적으로 신고-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2) 입법공백 뿐만 아니라 사법부정의의 문제도 해결해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형벌권 실현으로서의 형사소송에 피해자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 형사소송 자체가 피해중단을 위한 대응기회여야 한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말씀해주신 입법공백 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부정의도 디지털성폭력 문제 해결에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토론으로 의견을 보충합니다.

첫째, 검찰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불기소하는 비율(51%, 피해 경중 무관)이 높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완전삭제가 불가능한 해외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유포된 경우에도 불기소 비율은 유사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 유형에 비해 증거확보가 용이하고 피해상황을 계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기소율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 의지와 내부 수사규칙공유, 사이버수사대 인력 증강, 전문성 보강, 함정 수사 등 적극적 수사지원 등등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 선고시에 벌금형이 남발되고 있는 문제(2011~2017년 기준 전체 1,541명 중 벌금 1,109명으로 7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재 양형기준 평균 5년보다 판사들의 적정형량에 대한 인식은 2년 6개월로 절반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매우 중시해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입법조치를 통해 판사의 해임 및 탄핵까지 국민소환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등법원 판사 자격요건에 성폭력 관련 교육 훈련(training on sexual assault myths and law)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Bill C-5) 등을 추가하는 제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진님의 제안에서는 특히 세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진단을 비롯, 가해자 관리 및 교정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의견을 붙입니다.

### **(3) 미성년자 가해자 관리 및 교정 대책**

청소년들이 가해행위에 대하여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가해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경우는 성인도 상당합니다. 성인의 경우 세대 문화로 인해 야동, 불법촬영 등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더욱 떨어집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는 미성년자도 있지만 성인이 더 많습니다. 이 문제를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 경각심 부족의 문제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성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성적 일탈 행위로 바라보게 될 우려 역시 있습니다. 가해자 관리 및 교정 대책은 매우 필요합니다. 가해자 관리의 경우에는 부수조치를 다양화할 것 (현재는 신상공개와 수강명령 등이 있음), 그리고 가해자 교육 수강과 관련한 교육자가 가석방 요건부터 매우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의 양성, 인터넷 이용 제한, 등 다양한 부수조치들이 교육과 함께 제공되어야 교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토론

오규식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

## 1.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개요

### 가. 법적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사공보규칙 제16조(특강법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경찰청 훈령 제917호)

-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여야 한다.

### 나. 신상공개의 원칙

-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 원칙

※ (비공개 근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

-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규정된 범죄 중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상공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 가능

## 2. 토론의 쟁점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폭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지만, 실제 처분은 3월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공개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총 7명<sup>12)</sup>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정부는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 등 신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비판적 검토를 피할 수 없다.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부기준과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12) '박사' 조주빈,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영강' 배준환(제주청)

## 디지털 성범죄 현황

심화정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장)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디지털기기는 음성과 영상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통신 기기로서의 편리성과 함께 휴대용 pc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많은 기능들로 일상의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기기는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소지, 유포로 인하여 악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기기 사용에 대한 양면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성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폭력과 다르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가면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반복 재생산되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다수에 의해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지속적인 다운로드와 업로드로 인하여 근본적인 삭제가 어렵다는 점은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일회로 끝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불법촬영인 경우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누군가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거라는 두려움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점에서 일상이 파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성폭력과 다름없는 오히려 더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알게되기 보다는 지인의 제보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므로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의 상담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2019.7.-2020.6.) 총 533건의 성폭력 상담이 있었으며 그 중 57건의 사례가 디지털성범죄였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

서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유포불안에 대한 상담이 44건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몸캠이나 사이버괴롭힘(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는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내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대한 문의를 해 온 5%의 남성을 제외하면 피해를 호소한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다. 그 중에는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고 SNS를 통해 이루어진 어린 자녀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유형은 다음과 같다.

- SNS나 채팅으로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 후 사진, 영상을 확보하여 협박하는 경우
-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에 가담하게 한 뒤 이를 구실로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
- 아르바이트를 가장하거나 금전적 지원, 선물 등을 미끼로 성적 촬영물 확보하여 이를 구실로 유포
- 친밀한 관계인 상대가 가지고 있던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경우
- 공개 게시물 또는 해킹을 통해 접근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로 유포 협박을 하거나 경찰, 관련 기관을 사칭하며 위협하는 경우

동의에 의한 촬영물이지만 유포에 동의한 적이 없는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사진과 영상에 대한 유포불안, 몸캠 강요, 클라우드 해킹으로 인한 피해 등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고스란히 제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초기지원기관으로서 위기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고 삭제지원을 원하는지 수사진행을 원하는지 그 밖에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피해자가 현재 안전한 상태인지, 곁에서 피해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증거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안정시키며 상담을 진행한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대응의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 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경찰 사이버수사대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불법촬영과 유포를 인지한 순간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와 수치심이다. 피해자

는 유포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심리적 조력자가 적극 개입하여 만성적인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삭제지원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n번방’ 사건을 보면 디지털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인 10대 미성년이 피해자이면서 곧 가해자로 주목을 받았다. 불법촬영물 및 유포는 더 이상 성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며 그 공간 안에서 여성을 ‘노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성착취를 했다는 것은 여성을 인지하는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10대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상호 존중교육으로 까지 완성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오히려 사회에 만연한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과 없이 드러나는 여성혐오 문화에 젖어들기도 한다. 그렇게 왜곡된 성문화를 기반으로 디지털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대에 의해 성폭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의 장이 넓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법은 전문화되고 있다. 올바른 성문화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성평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제주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원 필요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 디지털 성범죄 극악성과 현 시대의 초라한 단면

올해 초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임. 이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크게 놀란 점은 성범죄의 극악성과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임. 또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보면서 ‘평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자와 가담자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음.

또한 최근 시민단체(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아동이 가장 바라는 총선 공약에 대해 조사했을 때, 1위가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음. 현 시대가 지식사회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발전을 토대로 한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성범죄가 도사리고 있음.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초라한 단면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음.

### ○ 정부의 정책 발표, 관련 법률 개정에도 지속되는 범죄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앙과 지자체별로 관련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관련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음.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음.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7월 17일에 사이버범죄 관련한 첫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해당 사례의 범주는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관련 가해자들이 검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진행되었음. 이 시점에 우리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함.

## ○ 실질적/장기적 개입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먼저 그동안 성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점검해보아야 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대부분 관련 정책 및 대응방안 발표,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음. 그러한 과정에서 일정부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거론만 되고 ‘흐지부지’ 사라지기도 하였음. 이제는 필수적인 개입과 지원들을 실질적/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 ○ 사전단계-사건 발생/인지 단계-사후단계별 체계적 개입 필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전단계-사건 발생/인지 단계-사후단계별로 체계적인 개입이 요구됨. 현재 가장 미흡한 부분은 사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방 교육/사업이라고 보임. 일반적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을 자세하게 다루는 교육이나 사업 등은 전무하다고 보임. 또한 사전/사후사업 관련해서, 도내 기관들이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떠한 것 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도내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소년복지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 양성평등교육센터가 개소할 예정임.

## ○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보다 많은 관심 필요

이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 있음. 그것은 바로 피해자 보호와 치료, 그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개입 등임. 하지만 기존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이 중심되고, 피해자 치료나 사후 개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임.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정서, 경제,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기록 삭제 및 주위 사람들의 피해 사실 인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 ○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개입 필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화된 개입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쳐놓은 덫에 자신도 모르게 걸려들 확률’이 높음. 최근 제주지역의 사례에서 보면, 피해자는 만11세~16세이고, ‘환영합니다. 수위 미션 성공하고,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라는 오픈채팅방 제목을 보고 피해를 당하기도 함. 아동/청소년의 경우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 접속은 매우 용이하지만, ‘이것이 성범죄의 미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에, 관련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이런 경우 사전단계의 예방교육, 사후단계의 지속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먼저, 10대 전용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를 운영 중에 있고,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시스템 구축,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등을 신설·운영할 계획임.

## ○ 제주 지역사회 차원의 더 적극적 노력 필요

그동안 제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사후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음. 하지만 앞으로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현재 지원 시스템의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제주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임. 이때의 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체계의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조정과 연계/협업체계의 공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제주의 아동/청소년,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그날까지 지자체, 관련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디지털 성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 현실태

-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제주가 안전지대가 절대 아님. ‘n번방’ 조주빈 사건이 터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배준환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기간에 더욱 집중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상황
-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무한 복제 등으로 피해자(유포) 불안과 사이버 괴롭힘 만연
-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호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한계

##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 사업

- 여성의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더 제주처럼’에 포함

### 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 목적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셉티드 환경조성
- 위치 :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 사업비 3억원
- 내용 : CCTV, 그림자광고조명, 안내판, 담장정비, 만족도조사

### 나.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 배경 : 생활안전 사각지대 및 범죄예방 및 대응
- 내용 : 생활안전사각지대(여성안심귀갓길, 우범지역, 대학인근 범죄취약지 등) CCTV 설치(273개소 1,229대),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방법용 1,000대분, 초등학교 1,000대분) 등

**다. 여성 안심무인 택배시스템 및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 참여 : 공모 통해 여성상담소 보조사업자 선정
- 내용 : 여성 1인 가구 200곳 시범사업 대상
- 지급물품 : 동작감지센서, 침입알림장치, 휴대용 호신벨 지급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2020년)**

- 사업내용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등에 대한 인식, 피해실태, 정책개발 등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주요 정책사업으로 연차별 추진 방침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 추진방향 수립

**○ 공공장소 「불법촬영 방지」 점검 및 예방활동**

- 참여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 대상/횟수 : 도내 공공화장실/월 1회
- 점검실적(3,096회) : 불법촬영물 설치 건수 0건
- \* 2018년도/314건, 2019년도/1,965건, 2020년 6월까지/817건

**○ 민.관.경 협업 「365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구축 운영**

-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 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통해 경찰과 여성인권상담소 등 현장 동행하여 여성폭력피해자 합동 대응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19.2)
- \* 개념, 내부 사건 처리절차, 대처방안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개정
- \* 적용범위 확대,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건물매입 완료 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중.

## □ 개선방안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 지속 추진
-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적극적인 지원 강화
  - 관련조례 개정(보호시설 종사자의 교육)
  - 교육청, 경찰청과 연계 강화/디지털 관련범죄 관련자 청년층 감안
  - 제주지역 양성평등 교육센터 운영시 프로그램 개발 모색
    - \*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
  - 도내 피해자 지원(삭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모색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적극적 역할 건의
- 지역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검토 필요
  - 양성평등교육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 대책 등 연계방안 검토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intended for taking notes or writing a memo.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